#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조인철・이개호・조 국

고민정 • 박희승 • 박수현

박민규 • 전진숙 • 민형배

박균택・양부남・정준호

주철현 · 정진욱 · 박지원

문진석 • 박해철 • 안도걸

오세희 · 강준현 · 김 현

한정애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8년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5%포인트 인상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에"를 "1만분의 2,424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1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			
<u>만분의 1,924에</u> 해당하는 금	<u>1</u> 만분의 2,424에		
액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